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목재용 보존제 등 II그룹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안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라, '18.12.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물질(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별로 일정기간 승인유예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4.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와 같은 II그룹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24.12.31일로 종료되었으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II그룹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6.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5. 이에, II그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사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평가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가급적 '25년내 승인을 신청하시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chemp.mcee.go.kr)에서 가능
6. 아울러, II그룹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중 승인 완료 및 현재 평가 중인 물질 목록을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공지사항에 공개하오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살생물제 상담센터(☎180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살생물제 관리제도 및 승인절차. 끝.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신자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사, 목재용보존제 및 목재제품 유관 협회,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 국립산림과학원장(목재산업연구과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장)

전문위원 **김한나** 환경연구관 **이정현** 과장 **허혜인** 전결 2025. 10. 16.

협조자

시행 화학제품관리과-5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mcee.go.kr  
(어진동)

전화번호 044-201-6828 팩스번호 044-201-6786 / khn5100@me.go.kr / 대국민 공개